

2-6 경기 용인시 건물공사장 소음·진동·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

(중앙환조 06-3-67)

◆ 재정업무 추진일지 ◆

- ◆ 2006. 6. 22 재정신청서 접수
- ◆ 2006. 6. 27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
- ◆ 2006. 8. 18 심사관 현지조사
- ◆ 2006. 12. 7 재정회의 개최
 - 위 원 : 위원장, 강정혜, 박형숙, 신동천, 신윤용
 - 심 사 관 : 환경주사 임은순
- ◆ 206. 12. 13 재정문서 송달

1. 사건의 개요

<사건요지>
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○○동 ○○번지 ○○아파트에 거주하는 김○○ 등 206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·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인 (주)○○와 시공사인 (주)○○건설을 상대로 206,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.

가. 당사자

- 신청인 : 김○○ 등 206명
- 피신청인 : (주)○○, (주)○○건설

나. 분쟁의 경과

- 2004. 10월 : 가설공사 시작(2006.4월 준공)
- 2004. 12월 : 주민요구사항 합의
- 스포츠센터 층고조정, 진출입로 램프터널 설치 등 6개사항
- 2006. 3월 : 주민요구사항 합의
- 아파트내 시설공사(176,400천원 범위내)
- 2005.8~9월 : 시공사 등에 민원제기(5회)

2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 주장

- 2004.11월경부터 피신청인의 공사가 시작되어 2006.4월 준공시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

동·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며, 이에 대해 시공사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○○빌리지내 다른 동과만 합의하고,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107동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.

·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면서부터 각종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·진동·먼지로 인한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총 206 백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.

나. 피신청인 주장

· 신청인들은 일반적으로 환경피해를 주로 유발하는 부지굴착공사기간 중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, 형틀해체작업 기간 중(2005.8~9월중)에는 소음민원이 있었으나, 민원발생 즉시 작업중단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였으며, 공사시 저소음·진동공법 및 장비투입, 세륜시설·살수기·방음벽 설치·운영 등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.

· 공사기간중에 신청인의 ○○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과 의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합의를 작성하였던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게 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 졌던 것이며 107동 주민들에 대하여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.

· 아울러, 건물이 준공된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위와 같은 합의 내용외에 신청인들에게만 거액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.

3. 사실조사결과

가. 분쟁지역 개황

· 분쟁지역은 용인시 수지구 ○○동사무소에서 약 300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며,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○○아파트(총 8개동, 428세대) 107동은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약 72~80m 이격하여 사선으로 평행배치하고 있다.

나. 피신청인 공사 현황

(1) 공사개요

- 용인시 ○○동 ○○번지 소재 『○○타운 신축공사』

는 8,921m²의 대지에 지하3층, 지상3층·4층의 운동시설 2개동을 건축(면적 4,528.30m², 연면적 24,640.24m²)하는 공사로서 (주)○○이 발주하여 (주)○○건설이 시공하였으며, 공사기간은 2004.10.18일부터 2006.4.3일까지 약 17개월이다.

(2) 사용장비 등

· 사용장비는 가설공사(2004.10.18~11.23)시 백호우, 토공사(2004.12.3~2005.3.31)시 백호우, 브레이커, 크롤러드릴, 천공기(T-4), 덤프트럭 등이며, 골조·마감공사(2005.4.1~2006.4.3)시 크레인,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.

· 발파횟수는 2005.1.22일~2005.3.22일까지(31일간) 총 272회가 시행되었고, 1일 발파평균횟수는 9회 정도이며, 최대 지발당 장약량 수준은 1.5kg이고 최빈 지발당 장약량 수준은 0.5kg 이다.

(3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

· 공사장 부지경계에 알루미늄 흡음 방음벽(H=6.5m, L=240m) 및 E.G.I 강판(H=2.4m) + 분진망(H=1.6m)을 설치(2004.10월)하였고, 비산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살수시설·고압살수기·세륜시설·방진벽·방진덮개 등을 설치·운영하였다.

다. 관할 행정기관 지도·점검 결과

·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○○아파트 107동에서 피신청인의 『○○타운 신축 공사』를 대상으로 2005.7월~10월까지 제기한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과 관련하여 ○○시가 총 7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

- 측정소음도가 56~72dB(A)로 나타나 이 중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dB(A)을 2회(2005년 8월 4일, 2005년 9월 2일)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(2회)을 한 바 있으며, 비산먼지분야에 대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.

라. 평가소음·진동도

· 관할행정기관의 측정소음도 및 공사현장의 투입장비

와 이격거리,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정도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가설공사시 62dB(A)이하, 토공사시 최대 75dB(A), 골조공사시 최대 72dB(A)로 나타났으며, 진동도 평가 결과는 최대 38dB(V)로 나타났다.

· 발파진동수준은 공사현장의 시험발파자료 등을 근거로 추정된 결과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107동의 경우 최대 0.175cm/s, 평균 0.082cm/s이고, 이를 진동레벨로 전환하면 최대 67dB(V), 평균 60dB(V) 정도이다.

4. 인과관계 검토

가.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

· 토공사 및 골조·마감공사시 평가소음도가 70~75dB(A)로 『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연구,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1997』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(A)을 초과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
나.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

· 공사장의 장비가동에 의한 연속진동도가 최대 38dB(V)이고, 발파시 충격진동도가 최대 67dB(V)로 평가되어 “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(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1996)”에서 제시된 진동피해 인정수준인 연속진동 73dB(V), 충격진동 86dB(V)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다.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

·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나,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(방음)벽 및 세륜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였고,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다소 불

편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5. 배상액 수준 검토

가. 배상기준

- 신청인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전체 공사기간(2004.10월~2006.4월) 중 평가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dB(A)을 초과하는 기간(4개월간)으로 하며,
 - 소음피해 배상액은 실제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인당 50,000원~340,000원으로 한다.
-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.


나. 배상액

- 배상액은 소음피해 41,860,000원, 재정신청 수수료 125,580원 등 총 41,985,580원으로 하며,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.

다. 결론

- 피신청인 (주)○○과 (주)○○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김○○외 205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 41,985,580원을 지급하되, 재정문의 정보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라. 재정결과에 대한 당사자 승복여부

- 승복 

월간 '환경기술인' 구독 안내

문의 : 02-852-2291

정가 : 6만원(1년)

※ 온라인 송금 (지로납부가능)